

# 「신용거래(융자/대주) 거래 설명서」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 고						
<p>설명서 전체</p> <p><u>통상</u></p> <p><u>제비용</u></p> <p><u>익일</u></p> <p><u>수령</u></p> <p><u>통지수령 거부</u></p> <p><u>사사오입</u></p>	<p>일반적으로</p> <p>거래에 사용된 모든 비용</p> <p>다음날</p> <p>받은</p> <p>통지를 받지 않겠다는</p> <p>반올림</p>	<p>어려운 금</p> <p>용용어 개</p> <p>선</p>						
<p>-고객님께서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·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-</p>	<p>-고객님께서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·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-</p> <p>1. 거래설명서 주요사항</p>	<p>거래설명서 항목 추가 및 상세 내용 개정</p>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<b>유사금 용상품 과 구 별되는 특징</b>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신용거래(융자, 대주)는 고객님이 거래소 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“신용거래융자” 또는 “신용거래대주”를 받아 결재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 1)~2) (생략)</li> <li>•신용거래(융자, 대주)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(100% 증거금 거래)할 때와 비교시 신용거래(융자, 대주)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. 1)임의처분(반대매매) 위험 : 매수증권(담보)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하회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분(반대매매)에 따른 손실 위험 2)레버리지 위험 : 일정률의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</li> <li>•은행 등 신용대출과의 차이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, 증권사의 신용거래(융</li> </ul> </td> </tr> </table>	<b>유사금 용상품 과 구 별되는 특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신용거래(융자, 대주)는 고객님이 거래소 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“신용거래융자” 또는 “신용거래대주”를 받아 결재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 1)~2) (생략)</li> <li>•신용거래(융자, 대주)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(100% 증거금 거래)할 때와 비교시 신용거래(융자, 대주)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. 1)임의처분(반대매매) 위험 : 매수증권(담보)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하회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분(반대매매)에 따른 손실 위험 2)레버리지 위험 : 일정률의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</li> <li>•은행 등 신용대출과의 차이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, 증권사의 신용거래(융</li> </ul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<b>꼭 알아 야할 기 본정보</b>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p>원금손실가능</p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p>자기책임원칙</p> </div> </div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<b>유사금 용상품 과 구별 되는 특 징</b>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신용거래(융자, 대주)는 고객님이 거래소 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“신용거래융자” 또는 “신용거래대주”를 받아 결재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 1)~2) (현행과 같음)</li> <li>•신용거래(융자/대주)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(100% 증거금 거래)할 때와 비교시 신용거래(융자/대주)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. 1) <b>본 거래는 매수증권(담보)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하회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분(반대매매)에 따른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</b> 2) <b>본 거래는 일정률의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</b></li> </ul> </td> </tr> </table>	<b>꼭 알아 야할 기 본정보</b>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p>원금손실가능</p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p>자기책임원칙</p> </div> </div>	<b>유사금 용상품 과 구별 되는 특 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신용거래(융자, 대주)는 고객님이 거래소 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“신용거래융자” 또는 “신용거래대주”를 받아 결재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 1)~2) (현행과 같음)</li> <li>•신용거래(융자/대주)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(100% 증거금 거래)할 때와 비교시 신용거래(융자/대주)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. 1) <b>본 거래는 매수증권(담보)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하회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분(반대매매)에 따른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</b> 2) <b>본 거래는 일정률의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</b></li> </ul>	<p>거래설명서 항목 추가 및 상세 내용 개정</p>
<b>유사금 용상품 과 구 별되는 특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신용거래(융자, 대주)는 고객님이 거래소 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“신용거래융자” 또는 “신용거래대주”를 받아 결재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 1)~2) (생략)</li> <li>•신용거래(융자, 대주)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(100% 증거금 거래)할 때와 비교시 신용거래(융자, 대주)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. 1)임의처분(반대매매) 위험 : 매수증권(담보)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하회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분(반대매매)에 따른 손실 위험 2)레버리지 위험 : 일정률의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</li> <li>•은행 등 신용대출과의 차이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, 증권사의 신용거래(융</li> </ul>							
<b>꼭 알아 야할 기 본정보</b>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p>원금손실가능</p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p>자기책임원칙</p> </div> </div>							
<b>유사금 용상품 과 구별 되는 특 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신용거래(융자, 대주)는 고객님이 거래소 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“신용거래융자” 또는 “신용거래대주”를 받아 결재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 1)~2) (현행과 같음)</li> <li>•신용거래(융자/대주)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(100% 증거금 거래)할 때와 비교시 신용거래(융자/대주)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. 1) <b>본 거래는 매수증권(담보)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하회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분(반대매매)에 따른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</b> 2) <b>본 거래는 일정률의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</b></li> </ul>							

	자, 대주)는 담보유지비율 하락 시 등에 반대매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.		<p><b>•은행 등 신용대출과의 차이</b>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서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, 증권사의 신용거래(융자/대주)는 담보유지비율 <b>미만으로 하락시 반대매매를 통해 채권이 즉각 회수됩니다.</b></p>							
<p><b>발생 가능한 불이익 사항</b></p>	<p>•연체시 대출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만기 미상환시 담보증권이 임의처분되며, <u>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•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시 <u>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&lt;예시 1,2&gt; (삭제)</p>	<p><b>발생 가능한 불이익 사항</b></p>	<p>•연체시 대출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만기 미상환시 담보증권이 임의처분되며, <u>모든 주식을 임의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남아있을 경우</u>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•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시 <u>원금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</p>							
<p><b>민원제기, 상담요청을 위한 연락처</b></p>	<p>&lt;삭제&gt;</p>	<p><b>중도상환 가능 여부</b></p>	<table border="1"> <tr> <td data-bbox="837 936 981 1189"> <p><b>중도상환 불가</b></p> </td> <td data-bbox="981 936 1109 1189"> <p><b>중도상환 가능 (수수료 있음)</b></p> </td> <td data-bbox="1109 936 1310 1189"> <p><b>중도상환 가능 (수수료 없음)</b></p> 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 align="center">○</td> </tr> </table>	<p><b>중도상환 불가</b></p>	<p><b>중도상환 가능 (수수료 있음)</b></p>	<p><b>중도상환 가능 (수수료 없음)</b></p>			○	
<p><b>중도상환 불가</b></p>	<p><b>중도상환 가능 (수수료 있음)</b></p>	<p><b>중도상환 가능 (수수료 없음)</b></p>								
		○								
		<p><b>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</b></p>								
		<p><b>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</b></p>	<p>•당사는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 등을 종합하여 투자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.</p>							
<p>&lt;신설&gt;</p>		<p><b>판매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</b></p>	<p>•<b>위험등급의 의미</b> - 1등급은 6단계 중 첫 번째 등급으로 매우 높은위험의 상품 - 최대 손실 가능금액 기준: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•<b>유의사항</b> -1등급 상품은 시장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며,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</p>							

	<p><b>2.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</b></p> <p><u>민원처리, 분쟁조정 절차 및 연락처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본 상품에 대한 민원, 상담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, 금융지원센터 (☎1588-4488) 및 홈페이지 (www.daishin.com)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</u></li> <li>• <u>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-금융민원센터(http://www.fss.or.kr) 또는 대표번호 (국번없이 ☎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</u></li> <li>• <u>당사에 민원을 제기(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 [전자민원] 이용)하는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① 접수 → ②민원조사 → ③처리결과 회신 (민원 조사기간 제외 14영업일 내 처리 원칙)</u></li> <li>• <u>또한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, 한국거래소 등 외부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</u></li> </ul> <p><u>민원·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한 소비자 숙지사항</u></p> <p><u>Q1.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모든 증권 매매시 신용거래(융자/대주)가 가능한가요?</u></p> <p><u>A. 신용거래는 상장종목 중 당사가 정한 종목 중에 가능하며, 신용 거래 가능 종목은 현재가 화면(화면번호 7021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</u></p> <p><u>Q2. 신용 거래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?</u></p> <p><u>A. 추가담보를 담보부족 발생(T일)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미납시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 수량만큼 회사가 반대매매 할 수 있습니다. 반대매매시 전일증가의 하한가 또는 15% 하락가격으로 반대매매 대상 수량을 산정하며, 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 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임의 처분에 대한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수시로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u></p> <p><u>Q3. 그 밖에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?</u></p>	
--	--	--

		<p>A. ①상환기일까지 미상환시, ②이자·매매수수료·제세금 납부 요구에 대한 미납입시 등의 경우에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의 추가납입 요구 없이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 <p>Q4. 신용거래(융자/대주)를 만기 전에 상환하거나 만기 도래시 연장이 가능한가요?</p> <p>A. 만기 전 상환 가능하며,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 만기연장은 신용거래융자는 60일 단위로 횡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. 단, 만기연장 시점에 신용거래 불가 종목인 경우 만기연장이 불가합니다. (신용거래 가능 종목은 정기 또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)</p> <p>신용거래대주는 90일 단위로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. 단, 연장 시점에 신용거래 가능 종목이면서, 동일 수량의 대주 가능 수량이 있어야 합니다.</p>	
	<p><b>위법계약 해지권</b></p> <p><b>자료열람 요구권</b></p>	<p>(10. 금융소비자의 권리 □ 위법계약해지권 내용 이동)</p> <p>(10. 금융소비자의 권리 □ 자료열람 요구권 내용 이동)</p>	
<p>1. 상품 개요 및 특성</p> <p>□ 대상고객</p> <p>가. 개인</p> <p>1) 신용 약정 체결 후 신용 거래 가능합니다.</p> <p>2) (생략)</p> <p>3) 신용 대주거래의 경우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 이수 후 '대주위험고지' 추가 약정이 필요합니다</p> <p>□ 신용거래(융자, 대주) 대상 종목</p> <p>1)~2) (생략)</p> <p>3)신용가능/불가종목의 그룹조정은 유동성, 재무제표, 주가의 급등락, 불공정거래 등을 고려하여</p>	<p>1. 상품 개요 및 특성</p> <p>□ 대상고객</p> <p>가. 개인</p> <p>1) 신용 약정 체결 후 신용 거래 가능합니다</p> <p>2) (현행과 같음)</p> <p>3) 신용 대주거래의 경우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 이수 후 '대주 신청 또는 대주 전용' 추가 설정이 필요합니다.</p> <p>□ 신용거래(융자, 대주) 대상 종목</p> <p>1)~2) (현행과 같음)</p> <p>3) 신용가능/불가종목의 그룹조정은 유동성, 재무제표,</p>	<p>대주전용 설정 신설</p>	

회사가 정기(연 2회) 및 수시로 지정됩니다. 그룹 조정이 있을시에는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.

- 4) (생략)  
 5) 신용거래 가능 종목은 "증거금률 차등적용 현황조회(화면번호 7248)"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□ 용자한도  
 가. (생략)  
 나. 신용거래 대주 한도  
 -요건별 신용대주 한도 차등 적용  
 -대주한도는 단계별로 적용되며, 매월말 기준 대주 거래경험 판단 후 매월 첫 영업일에 한도 적용

구분	요건	대주한도 (주민번호 기준)
초기	· 사전 교육 및 모의투자 이수	3천만원
경험	· 최근 2년 내 5회 <sup>주1)</sup> 이상 투자 & ·누적신용대주 매도금액 5천만원 <sup>주2)</sup> 이상	7천만원
성숙	· 최근 2년 내 5회 이상 투자 & ·누적신용대주매도금액 5천만원 이상 & ·최초투자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	10억원

□ 담보유지비율  
 가. 종목그룹별 담보유지비율

종목 그룹	담보유지비율	
	신용거래용자	신용거래대주
1그룹	140%	120%
2그룹	140%	
3그룹	150%	
4그룹	150%	
5그룹	160%	
6그룹	160%	

주가의 급등락, 불공정거래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기(연 2회) 및 수시로 조정합니다. 그룹조정이 있을시에는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.

- 4) (현행과 같음)  
 5) 신용거래 가능 종목은 "현재가 화면(화면번호 7021)" 또는 "증거금률 차등적용 현황조회(화면번호 7248)"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□ 용자한도  
 가. (현행과 같음)  
 나. 신용거래 대주 한도  
 -요건별 신용대주 한도 차등 적용  
 -대주한도는 단계별로 적용되며, 매월말 기준 대주 거래경험 판단 후 매월 첫 영업일에 한도 적용

구분	요건	[대주신청 계좌] 한도 (주민번호 기준)	[대주전용 계좌] 한도 (주민번호 기준)
		초기	좌 등
경험	좌 등	7천만원	<u>7천만원</u>
성숙	좌 등	10억원	<u>3억원</u>

□ 담보유지비율  
 가. 종목그룹별 담보유지비율

종목 그룹	신용거래용자	담보유지비율	
		신용거래대주	
		대주신청 계좌	대주전용 계좌
1그룹	140%	120%	<u>105%</u>
2그룹	140%		
3그룹	150%		
4그룹	150%		
5그룹	160%		

대주전용  
계좌 한도  
반영

대주전용  
계좌 담보  
유지비율  
반영

<p>나. (생략)</p> <p>다. <u>신용거래대주 담보유지비율</u>은 대주 잔고만 보유시 120% 입니다. 단, 동일 상품 내 신용/대출금을 함께 보유한 경우 신용/대출 담보유지비율로 적용됩니다.(신용/대출 잔고 보유시 140%~160% 담보유지비율 적용)</p> <p>라.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 납입을 요구합니다. 담보유지비율 미달 및 반대매매 대상 금액 <u>산출</u> 기준은 "계좌 담보유지비율"로 산정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담보평가 및 추가담보제공기간 &lt;표 생략&gt;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이자율 및 징수일 등 &lt;이하 생략&gt;</p> <p>* 이자율 계산시 한편 놓기(<u>용자일 불산입·상환일 산입</u>), 단, 신용대주의 경우 당일매도/당일 매수시 1일치 이자 발생</p> <p>* 이자율 계산기간은 보통년 365일, 윤년 366일로 하며, 원미만은 <u>절사한다</u>.</p> <p>&lt;신설&gt;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6그룹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160%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</td> </tr> </table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<u>신용거래대주 [대주 신청 계좌]의 담보유지비율</u>은 대주 잔고만 보유시 120% 입니다. 단, 동일 상품 내 신용/대출금을 함께 보유한 경우 신용/대출 담보유지비율로 적용됩니다. (신용/대출 잔고 보유시 140%~160% 담보유지비율 적용)</p> <p>라. <u>신용거래대주 [대주 전용 계좌]의 담보유지비율</u>은 105%가 적용 됩니다. 대주 전용 설정 계좌는 <u>신용용자/증권담보대출 이용 불가하며, 대주 거래만 가능합니다</u> ※[대주 전용 계좌]는 담보비율 평가 시 <u>담보증권 종류에 따라 할인 평가합니다</u>.</p> <p>마.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 납입을 요구합니다. 담보유지비율 미달 및 반대매매 대상 금액 <u>산출</u> 기준은 "계좌 담보유지비율"로 산정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담보평가 및 추가담보제공기간 &lt;삭제&gt; &lt;표 삭제&gt;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이자율 및 징수일 등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* 이자율 계산시 한편 놓기(<u>용자일은 포함하지 않으며 상환일은 포함</u>), 단, 신용대주의 경우 당일매도/당일 매수시 1일치 이자 발생</p> <p>* 이자율 계산기간은 보통년 365일, 윤년 366일로 하며, 원미만은 <u>버린다</u>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사항</p> <p>가. <u>매분기말 누적기준 미수금 발생 20일 초과 또는 담보부족발생 20회 초과 발생시 신용거래가 1개월간 제한됩니다</u>.</p> <p>나. <u>증거금 100% 계좌일지라도 매도상환으로 인한 이자징수 또는 차손발생으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</u>.</p>	6그룹	160%			
6그룹	160%					
<p>4.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에 관한 사항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담보증권 평가</p> <p><b>당일 증가</b>(당일 증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최근일 기준가격)로 평가합니다. 다만 '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'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이유로 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.</p> <p>※당일 증가로 평가하지 않기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.</p>	<p>4.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에 관한 사항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담보증권 평가</p> <p><b>당일 증가</b>(당일 증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최근일 기준가격)로 평가합니다. 다만 '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'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.</p> <p>※당일 증가로 평가하지 않기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.</p>					

<신설>

□ 반대매매 발생 사유 등  
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① 고객계좌 예탁 현금 → ② 담보증권 → ③ 그 밖의 고객의 증권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채무변제에 **충당** 할 수 있습니다.  
(이하 생략)

<신설>

□ 채무 충당 순서  
반대매매를 통한 매각대금은 ① **처분제비용** → ② 연체이자 → ③ 이자 → ④ 채무원금 순으로 **충당**됩니다.

가. 담보평가 기준가

- 담보평가 기준가

구분	평가기준
상장주권,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	한국거래소 당일 증가대용가가 있는 종목에 한함)
상장채권, 공모파생결합증권	채권평가기관의 평가가격(대용가가 있는 종목에 한함)
집합투자증권	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
RP	매입원금

- [대주 전용 계좌] 담보 평가 기준가

구분	평가기준
상장주권,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	한국거래소 당일 증가대용가가 있는 종목에 한함)의 88% 할인 평가
상장채권, 공모파생결합증권	채권평가기관의 평가가격(대용가가 있는 종목에 한함)의 98% 할인 평가
집합투자증권	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
RP	매입원금

□ 반대매매 발생 사유 등  
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① 고객계좌 예탁 현금 → ② 담보증권 → ③ 그 밖의 고객의 증권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**반대매매를 통해** 고객의 채무변제에 **사용** 할 수 있습니다.  
(현행과 같음)

□ 반대매매 절차 예시  
(발생 가능한 불이익 사항 <예시1, 2> 내용 이동)

□ 채무 변제 순서  
반대매매를 통한 매각대금은 ① **처분에 사용된 모든 비용** → ② 연체이자 → ③ 이자 → ④ 채무원금 순으로 **사용**됩니다.

<p><b>9. 신용거래대주 시 유의사항</b></p> <p><b>□ 공매도 포지션 보고·공시 제도</b>  가.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잔고(공매도 잔고)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.  -공매도 잔고 <u>보고대상</u> :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0.01% 및 평가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 -공매도 잔고 <u>공시대상</u> : 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종목별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비율이 0.5% 이상인 경우  나. (생략)</p> <p><b>□ 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참여 제한</b>  가.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*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 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.  *증권신고서, 소액공모공시서류, 주요사항보고서, 한국거래소 공시(공정공시 포함)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 나.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<u>모집(매출) 가액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*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.</u>  *모집(매출)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(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) 등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9. 신용거래대주 시 유의사항</b></p> <p><b>□ 공매도 포지션 보고·공시 제도</b>  가.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잔고(공매도 잔고)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.  -공매도 잔고 보고 <u>및 공시 대상</u> :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0.01% 및 평가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 -<del>공매도 잔고 공시대상</del> : <del>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종목별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비율이 0.5% 이상인 경우</del>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□ 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참여 제한</b>  가. 「<u>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/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*된 날의 다음날부터 모집가액/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</u>」(유상증자기간) 동안 해당 <u>주식에 대하여 대주매도를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 됩니다.</u>  *증권신고서, 소액공모공시서류, 주요사항보고서, 한국거래소 공시(공정공시 포함)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 나. <u>위반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또는 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</u> 다만, <u>마지막 공매도 이후 체결일 기준으로 유상증자기간 이내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 이상을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 체결한 경우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유상증자 참여가 허용됩니다.</u>  *모집(매출)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(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) 등</p> <p><b>□ 공매도 관련 전환사채(CB)/신주인수권부사채(BW) 취득 제한</b>  가. 「<u>주권상장법인의 CB/BW의 발행계획이 처음 공시*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부행사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</u>」(사채발행기간) 동안 해당 <u>주식에 대하여 대주매도를 한 경우 CB/BW 취득이 제한됩니다.</u>  * 증권신고서, 소액공모공시서류, 주요사항보고서, 한국거래소 공시(공정공시 포함)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</p>	<p>자본시장  법 개정사  항에 따른  공매도 제  도 개선  반영</p>
--	--	--

	<p>나. 위반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또는 지급 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 다만, 마지막 공매도 이후 체결일 기준으로 사채발행기간 이내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 이상을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 체결한 경우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CB/BW 취득이 허용됩니다.</p>	
<p><b>11. 기타 유의사항</b>  <input type="checkbox"/> 약관·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 가.~다. (생략)  라. 다만, 관계법규 제·개정 등으로 약관 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, <u>고객 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<b>11. 기타 유의사항</b>  <input type="checkbox"/> 약관·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 가.~다. (현행과 같음)  라. 다만, 관계법규 제·개정 등으로 약관 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<u>게시할 수 있습니다.</u>  <b>마. 고객 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b></p>	